

강릉시의회 공고 제2023-50호

「강릉시 한복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강릉시 의회의장

강릉시 한복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우리나라 전통문화유산인 한복의 가치를 높이고 그 멋과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기 위한 한복 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나. 한복 진흥시설(안 제6조)
- 다. 한복 입기 권장 및 한복착용자의 우대(안 제7조, 제8조)
- 라. 한복 입는 날 지정(안 제9조)
- 마. 한복 홍보대사 위촉(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릉시의회의장 (참조: 의회사무국 행정전문위원/☎033-640-4033)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기타 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25522)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의회 의회사무국
- 이메일: rhdchfhd@korea.kr
- 팩 스: 033-640-4070

- 붙임 1. 강릉시 한복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1부. 끝.

[붙임 1]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 한복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의 한복문화를 활성화하고, 우리 민족의 고유 의상인 한복 입기를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복을 자주 입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복”이란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의상으로서 보편적으로 치마·저고리·바지·두루마기·조끼·마고자 등의 전통복식을 말하며 생활한복을 포함한다.
2. “고유명절”이란 예부터 전해오는 계절적·자연적 정서와 제례 및 축일을 말하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설날, 추석, 단오, 정월대보름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한복문화 활성화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올바른 한복 입기 문화 장려 등 한복문화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 등) 시장은 한복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한복문화 활성화 및 한복 거점을 위한 사업
2. 전통복식에 대한 홍보 및 관광 활성화 사업
3. 한복 거점 활성화를 위한 한복 진흥시설 설치 및 운영
4. 그 밖에 한복 입기 장려에 필요한 사업

제6조(한복 진흥시설) ① 시장은 한복 입기 장려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한복 진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한복 입기 체험 및 대여
2. 한복 전시 및 홍보
3. 한복 문화 진흥을 위한 교육
4. 한복 관련 각종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그 밖에 시장이 한복 입기 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한복 진흥시설을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가 개최하는 행사·축제와 연계하여 개최현장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한복 입기 권장) ① 시장은 관내의 기관 및 교육기관, 단체, 기업 등에 한복 입기를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고유명절 및 시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 축제 기간 동안에 시민에게 한복 입기를 권장할 수 있다.

제8조(한복착용자의 우대) 한복을 입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입장료, 관람료 등을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

라 감면할 수 있다.

1. 시가 운영하는 유료 문화·관광시설에 입장하는 경우

2. 시가 주관하는 각종 전시 및 문화공연행사 등을 관람하는 경우

제9조(한복 입는 날 지정) 시장은 한복 입기를 장려하기 위하여 강릉시 한복 입는 날을 지정할 수 있다.

제10조(한복 홍보대사 위촉) 시장은 시의 한복문화 활성화에 기여했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을 한복 홍보대사로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세부사항은 「강릉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육성 및 지원) 시장은 한복 입기를 장려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시 소재 법인이나 기관·단체 등에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① 시장은 한복문화 활성화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기관 및 단체, 개인을 대상으로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강릉시 포상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 법규명: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제·개정안 내용	의 건	비 고